

# kiri Weekly

2014.12.29 제314호

## 포커스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정책 방향과 시사점

## 글로벌 이슈

미국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거래 증가

인도 보험시장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상우 수석연구원, 김동겸 선임연구원

## 요약

■ OECD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인 인구고령화와 세계경제 침체가 결합되면서 연금제도가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유럽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특징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됨. OECD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기간 상향 조정 등의 정책과 더불어,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정책 등을 제시함. 향후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재정 불안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사연금제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OECD는 회원국 연금제도 동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한 ‘2014년 연금전망(이하 OECD)<sup>1)</sup>’을 12월 8일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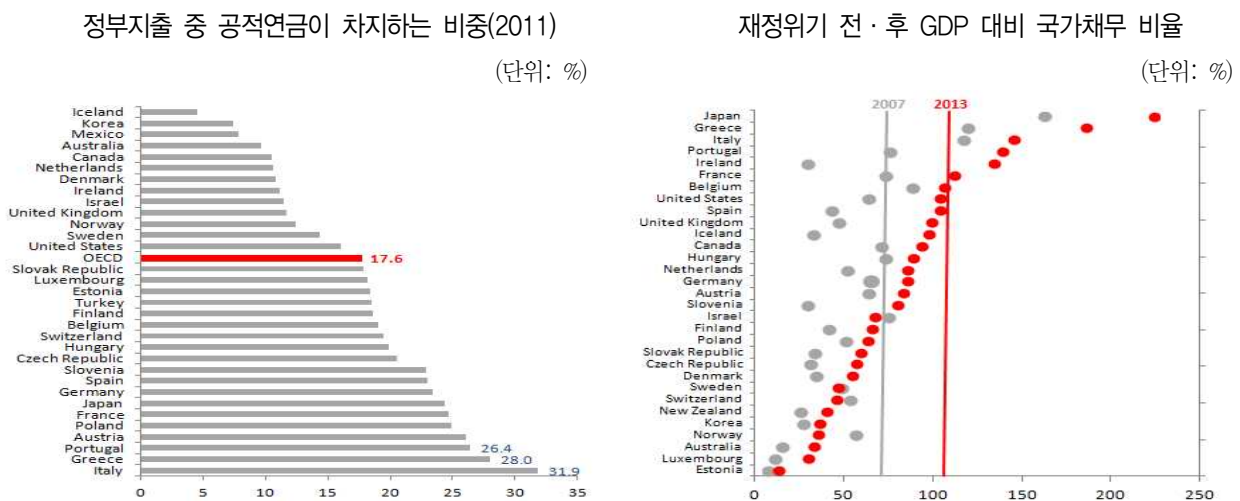
- OECD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재정의 고갈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제도가 세계경제 침체와 인구고령화가 결합되면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특히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구조가 정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연금제도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 상당수 국가에서 적극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OECD 주요국들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복지관련 지출이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재정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차입을 통한 추가적 연금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1) OECD Pensions Outlook 2014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은 평균 17.6%에 이르고, 특히 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국가재정이 불안한 일본 등에서는 20%를 상회하고 있음.
-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유럽 재정위기 전 73.3%(2007)에서 이후 109.5%(2013)로 36.2%p 급증하였으며, 특히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60%p 이상 증가함.
  - 이에 OECD는 이들 국가에 대해 국채발행 등 무리한 정부차입을 통한 과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끊고 재정안정과 국가부채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정책의 추진을 권고함.

〈그림 1〉 정부지출 중 공적연금의 비중 및 국가채무비율 현황



자료: OECD Pensions Outlook 2014.

■ 유럽재정 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개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함.
  - 공적연금 개혁은 주로 연금수급연령 상향, 연금급여 삭감, 자동조정장치 도입<sup>2)</sup>, 근로유인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표 1〉 참조).
  -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를 위해 자동가입제도 도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투자규제 개선, 연금관리비용 절감 정책 등이 추진됨(〈표 1〉 참조).

2) 인구고령화와 경제적 변화를 연금급여나 수급연령에 자동으로 연계시키는 장치임.

〈표 1〉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정책동향 요약(2012~2014)

구분	재정건전성: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은퇴소득의 적정성: 급부 개선
보장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신규 급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에스토니아,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li> </ul> </li> <li>○ 자동가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레, 영국, 아일랜드, 터키, 룩셈부르크</li> </ul> </li> <li>○ 사적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li> </ul> </li> </ul>
연기금 투자 다각화 및 안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 선택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영국</li> </ul> </li> <li>○ 연기금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슬로바키아</li> </ul> </li> </ul>
연금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액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 포르투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혜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li> </ul> </li> <li>○ DC형 제도의 보험요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 이스라엘, 영국</li> </ul> </li> </ul>
연금세제 및 보험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소득세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프랑스, 포르투갈</li> </ul> </li> <li>○ DB형 보험요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룩셈부르크</li> </ul> </li> <li>○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미국, 일본, 멕시코, 폴란드</li> </ul> </li> </ul>
연금액 연동장치 (Index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액연동과 연금재정을 고려한 자동조정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코,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li> </ul> </li> <li>○ 장기 연금액 연동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헝가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스페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조합하여 연금액 조정</li> </ul>
근로유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과 여성의 은퇴연령 동일화(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폴란드</li> </ul> </li> <li>○ 은퇴연령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아일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호주</li> </ul> </li> <li>○ 보험료 최소 납입기간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룩셈부르크</li> </ul> </li> <li>○ 조기은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li> </ul> </li> </ul>	-
제도운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조직 통합을 통한 비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그리스, 일본, 캐나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형 연금의 수수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레, 호주, 영국</li> </ul> </li> <li>○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 뉴질랜드</li> </ul> </li> </ul>

자료: OECD Pensions Outlook 2014 요약.

■ OECD는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OECD가 제시한 연금개혁 목표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것임.
- 이에 따라, OECD는 향후 연금개혁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함.

■ 첫째, 근로기간의 연장,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보험요율 인상 등의 정책 추진

- OECD는 조기퇴직 억제, 정년연장, 퇴직 후 재취업 등 소득활동 연장을 통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상향 조정이나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 등이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함.
  - 이를 위해 정년연장, 취업연령 차별 폐지, 취업조건 개선, 재교육 기회 확대 등의 노동정책이 동반 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둘째, 평균수명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장수리스크 관리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sup>3)</sup>

- 가입자의 평균수명 증가 추세를 연금제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생명표의 조기 개정 등이 요구되며, 장수리스크 헤지 기법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필요함.
  - 예를 들어,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수채권 발행, 관련 상품의 가격 또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수 개발 및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

■ 셋째, 강제가입 또는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 사적연금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가입 의무화나 자동가입제도 도입<sup>4)</sup> 등 사적연금 접근성 강화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OECD는 사적연금제도에서 자동가입을 실시하고 있는 6개국 경우, 자동가입제도가 사적연금 가입 률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함.

〈표 2〉 국가별 자동가입제도 도입 전·후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구분	캐나다 (2000)	미국 (2006)	이태리 (2007)	뉴질랜드 (2007)	칠레 (2013)	영국 (2013)
도입 전	-	27.5%	8.5%	15.8%	77.5%	46.5%
도입 후(2013)	21.5%	29.4%	15.9%	64.4%	78.9%	49.8%

주: 생산활동 인구대비 사적연금(미국은 401k, 영국은 퇴직연금 기준) 가입률.  
 자료: OECD Pensions Outlook 2014.

3) OECD는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 추세를 연금정책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연금 책임준비금이 10% 이상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음(OECD Pensions Outlook 2014, p. 37).  
 4) 자동가입제도(automatic enrolment schemes)는 근로자가 가입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동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사업주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이직 시 새로운 직장에서 가입한 연금제도로 자동이전되는 연금가입방식임.

- 또한, 저소득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 강화, 연금제도 운영비용 절감,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분담 비율 설정 등이 필요함.
- 이러한 OECD국가의 연금개혁 동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사연금제도 간 유기적 역할분담체계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공·사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정립,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고령자의 소득활동 유인, 비효율적인 공적연금의 부담체계 개선, 사적연금 가입률 확대 정책 등이 필요함.
  - 공적연금의 역할 조정에 따라 노후소득 확보가 불안한 중산층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의 가입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금·퇴직연금의 이원화 퇴직급여체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여 가입이 미진한 영세·중소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저소득층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과 연금관리 비용 절감 등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요구됨. **kiri**